

朝鮮時代 中期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beckchuck in the Middle period of Chosun Dynasty(Second) - Focusing on the History of Chosun Dynasty

이은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Eun-kyung Lee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Abstract

The remarkable fact regarding the History of Chosun Dynasty(from Jungjong- Youngjo) is that any slightest evidence can't be found that Pobeckchuck was used to measure clothes or various Pobecks.

There remains the document that in the 22nd years of Myeonjong, Japan required that Pobeckchuck be used, but it couldn't be allowed because of the reason it was made in the former king. This fact raises the high possibility that Pobeckchuck could be the most trustworthy standardized ruler at that time, and in other point of view, it can be presumed that the measurement in the period of King Sejong continued to have been used until this time. It can be seen that the length of one Chuck of Pobeckchuck at this time must have been equivalent to 46.73cm of Pobeckchuck of Samchuck in the period of Sejong.

In the History of Sunjo Period, many records on Pobeckchuck can be found, which fact seemed to have rectified the measurement system which was disordered by military revolt, though the reason is not clear. Also a record can be found that in the period of Sunjo, Chinese envoy required the Sunjo Regime to use Pobeckchuck for the measurement of copper pillar, which record supports the fact that Pobeckchuck is the standardized ruler.

Another record that in the 26th period of Youngjo, Pobeckchuck of Samchuck was corrected according to the Kyeongkukdaejeon shows that the length of Pobeckchuck was 46.80cm at that time. Also, the record which rectified many rulers with the comparison of Hwangjong-chuck, Ju-chuck, Joryeki-chuck, Yongjo-chuck, etc. with one another reveals that the rulers used in the period of Sejong continued to have been used unchanged until in the period of Youngjo.

Key Words : Pobeckchuck, History of Chosun Dynasty. Middle period of Chosun

I. 緒論

1. 問題의 提起

衣服을 짓기 위해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는 尺度가 기본이 된다. 때문에 布帛尺의 研究는 우리 衣服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몇 백년 전, 指尺 혹은 尺貫法을 이용하여 지은 옷을 이해하고, 그가 지닌 計劃과 比例와 바탕을 파악하자면 당시 사용하였을

用尺의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인은 1981년에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고, 1993년에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各 時代마다 달랐던 布帛尺의 1尺 길이와 尺의 變遷과정을 밝혀 보았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完譯 朝鮮王朝實錄을 보면서 당시 手作業으로 찾아내었던 布帛尺에 대한 記錄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찾아낸 記錄이 훨씬 많고 더불어 새로운 사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서 미비했던 부분을 補完하고 誤謬가 있었던 부분을 修正해야 한

* Corresponding author: Eun-Kyung Lee
Tel: 042) 280-2464, Fax: 042) 280-2460
E-mail: dream@dju.ac.kr

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이전의 布帛尺에 관한 논문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文獻에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만을 발췌하여 분석함으로써 歷史的 眞實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너무 많기 때문에 布帛尺에 관한 內容을 기준으로 획기적인 事件과 事實이 있던 時代를 구분하여 前期, 中期, 後期로 나누어 研究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처음 布帛尺이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世宗 13年이다. 이 때 校正한 이후 布帛尺을 城壁 築造시, 距離 測量시, 家具 製作시 등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과 混用하여 使用하였던 燕山君 代까지를 前期로 정하였다. 中宗 代에 들어서 여러 종류의 자들과 혼용해 사용하면서 布帛尺을 기준적으로 사용한 記錄이 보인다. 以後 布帛尺은 일반에서 사용되는 私尺과 혼용되면서 度制가 점차 무질서해지는데 이를 世宗 代 記錄에 맞추어 整備한 英祖 代까지를 中期로 정하였다. 그리고 正祖 이후 옷감을 測量하는 자로서 布帛尺 이외에 針尺, 曲尺, 鯨尺 등 材質에 따라 用途에 따라 多様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時期부터 開化期까지를 後期로 분류하였다.

朝鮮王朝實錄 前期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研究는 이미 발표하였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朝鮮時代 中期(中宗~英祖)를 다루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및 內容

本 研究는 朝鮮時代 中宗代부터 英祖代까지를 中期로 간주하고 이 時期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을 史的으로 定立 하는데 目標을 두었다. 研究 對象은 布帛尺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다른 여러 종류의 자들은 그 比例를 이용하여 布帛尺을 치수를 밝히는데 필요한 것들만 다루기로 한다. 研究資料로는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하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학자들의 研究를 재인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布帛尺의 의미는 개념상 차이가 있어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針尺, 鯨尺, 布尺, 裁尺, 綿紬尺, 苧布尺 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해석하였다. 社會가 分化될수록 각 분야에서 專用의 자(尺)를 만들어 냄에 따라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黃鍾尺 등 여러 종류의 자(尺)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치수가 규명되어야 만 布帛尺의 길이를 알 수 있으므로 第3章에서는 朝鮮時代 사용되었던 여러 종류의 尺을 설명하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朝鮮王朝實錄 이의 다른 文獻에 나타난 朝鮮時代 中期 布帛尺의 변천과정

을, 第5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中宗부터 英祖代까지의 布帛尺을 발췌하여 본문에 명시하고 第4章의 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朝鮮時代 中期 國家에서 채택하였던 布帛尺 1尺의 정확한 길이를 밝히고자 한다.

II. 布帛尺의 定義 및 單位

1. 布帛尺의 定義

布帛尺이란 衣服을 裁斷하거나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자를 말하며(六典條例, 1973), 尹張燮(1975)은 布帛尺은 裁縫用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中國에서는 俗稱 裁尺이라고도 한다고 하여 尺度하는 옷감의 종류, 사용되어지는 장소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布帛尺이라 일컫고 있다. 한편 朝鮮王朝實錄 世宗 12年에 보면 '古尺, 周尺, 布帛尺, 曲尺, 針尺, 平市正尺, 綿紬尺, 苧布尺, 營造尺, 黃鍾尺, 造禮器尺 등 여러 종류로 가리게 되었으며'라고 쓰여 있어 당시에는 布帛尺, 綿紬尺, 針尺, 苧布尺 등으로 엄밀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같은 구분은 開化期때 와서 더욱 명백해지는데 朝鮮舊社會事情(1929)에 보면 '布帛尺이란 布木에 使用되는 尺으로 曲尺 一尺六寸一分에 該當하며, 針尺은 裁縫에 使用되는 尺으로 鯨尺과 같고 曲尺 一尺六寸六分과 同一하며 이 尺은 家庭用으로 私尺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있어 布帛尺은 商人들이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商業用 尺인 반면, 針尺은 가정에서 재봉할 때 사용하는 私尺으로서 布帛尺과 針尺은 用途에 있어서 다름을 설명해 주고 있다.

2. 尺度의 起源 및 單位

度量衡은 그 기준이 처음에는 人體의 각 부분이었고 이어서 穀物粒에서 求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예를 들면 尺은 손으로 寸數를 재는 象形文字이고 FEET(FOOT)는 발길이 등이다(衣生活研究, 1978). 이것은 항상 손쉽게 이용될 수 있어서 안정되고 변화가 적으며 표현이 직접적이어야 하였으므로 人體 및 自然物에서 그 기준을 求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尹張燮, 1975). 이러한 두 가지 說에 對하여 그 根源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人體基準說(身度尺)

東洋에서 처음 사용한 尺度의 單位는 人體의 一部分이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최고의 기록으로는 中

國 「史記」의 「夏本記」中 「聲爲律 身爲度 稱以出」이란 것이 있다(史記, 卷2. 夏本紀初).

우리 나라도 人體를 이용한 手長(手長), 身長(身長) 등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저고리 깃고대는 엄지와 中指를 벌린 길이였고, 1寸은 中指의 一節길이, 1尺은 겨드랑이에서부터 中指 끝까지의 길이였다(尹張燮, 1975). 「指尺」은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寸으로 잡고 만든 자(尺)의 이름이다(李圭景, 1959).

2) 自然物 基準說

自然物 基準說이란 秬黍, 鬮絲, 馬尾같은 自然物에서 尺度의 基準이 생겼다는 說로서 秬黍 中間值 굵기를 택해 그 넓이를 기준하여 1分으로 하고 90分 = 9寸을 黃鍾律管의 길이로 정하면 이것이 中國 古代부터 전래된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漢書, 卷21, 上, 律歷志).

「韓詩外傳」에 「禹十寸爲尺 湯十二寸爲尺 武王八寸爲尺」이란 尺의 制度에 관한 記錄이 있다(朴興秀, 1978) 이 기록은 「漢書律歷志」에서 黃鍾之長인 9寸 길이가 尺度의 기원이란 說과 유사한 내용인데 今일까지 발견된 尺度에서나, 「禮記」에 記錄된 길이 表記에서 尺이란 10寸 單位였음을 알 수 있다(禮記 卷3 王制篇).

III. 朝鮮時代 尺度의 種類

朝鮮時代에서는 布帛尺, 周尺, 黃鍾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布帛尺의 길이를 찾아내려면 諸 尺度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周尺

周尺이란 中國 周代의 尺으로 土地의 丈量과 里程 等 距離를 測定할 때 사용되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12年 9月에 보면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五禮 布帛尺에 준하면 4寸6分5釐, 田制詳定所 遵寸冊의 布帛尺에 준하면 4寸4分5釐에 해당하여 그 길이는 20.81cm였다고 考證되고 있다(朴興秀, 1967). 經國大典에는 周尺이 黃鍾尺의 6寸6釐, 즉 21.04cm로 약간 길어졌으며, 肅宗때의 길이는 20.94cm였고, 正祖 20年에 완성된 華城儀軌에는 19.63cm로 되어 있다(尹張燮, 1975).

2. 黃鍾尺

黃鍾이란 古代 音律의 基本樂器를 말하며 黃鍾管의 길이를 尺度의 기준으로 한 것을 黃鍾尺이라 한다. 朝鮮時代 世宗 12年 許調와 朴堧이 中心이 되어 尺度考正을 實施하였을 때의 黃鍾尺 길이는 34.72cm였다고 考證되었다(朴興秀, 1967). 이 길이는 朝鮮時代 尺度의 基本이 되었는데, 世宗때의 五禮 布帛尺에 준하면 7寸4分3釐이다. 英祖 26年 尺度 改正 時의 길이는 31.25cm로 世宗때에 비해 짧아졌다.

3. 營造尺

營造尺은 樂器의 製造와 建築, 造船, 造車 木工, 刻工, 石工 등, 주로 官家에서 쓰던 자(尺)로 通稱 木尺, 工尺, 營造尺, 魯班尺 등으로 불린다. 世宗 12年(1430年)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할 때 黃鍾尺의 9寸인 黃鍾律管長은 營造尺의 單位로 사용되었다(增補文獻備考, 卷85). 이때의 길이는 31.24cm로써 五禮 布帛尺에 준하면 6寸9分7釐, 기준 尺度인 黃鍾尺에 준하면 8寸9分9釐가 된다(經國大典, 卷之六).

4. 造禮器尺

造禮器尺은 文廟 및 宗廟 祭禮의 制度 基準尺이었다(六典條例, 1973). 世宗實錄 五禮 幣帛 欄에 보면 幣帛 制度에 사용하는 자(尺)는 布帛尺의 6寸4分에 該當한다는 記錄과 함께 첫머리에 新制 造禮器尺의 實寸圖를 그려 두었는데 正確한 자(尺)로 實測해 본 길이는 28.64cm였다. 經國大典의 造禮器尺은 28.57cm이며, 英祖 26年 改正 尺度 時 길이는 28.41cm이다.

IV. 朝鮮王朝實錄 이외의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

太祖에서 太宗까지는 前代의 度量衡制度를 그대로 사용한 듯 기록이 없다가, 世宗때 諸 制度의 개혁과 정돈이 이루어져 度量衡 制度가 정비를 보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同書 五禮 幣帛 欄에 “자(尺)는 造禮器尺을 使用하는데 이 자(尺)는 布帛尺 11尺5寸2分에 該當된다.”(世宗實錄

券128 4張)고 있는 즉, 造禮器尺은 官府의 布帛尺으로 6寸4분이 된다.

그런데 世宗 13年(1431年) 田制詳定所 遵寸冊에 記錄된 布帛尺의 길이는 46.73cm로써 五禮儀의 布帛尺 길이보다 1.98cm가 더 길다(李弘植, 1972). 이렇게 두 종류가 생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五禮儀의 布帛尺과 田制詳定所 遵寸冊의 布帛尺을 世宗 代의 諸 尺度로 본다.

朴興秀(1967)는 世宗 代의 遺物을 실측하여 당시 度量衡의 原器였던 黃鍾尺의 正確한 길이는 34.72cm라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布帛尺의 길이를 추산하면 表 1과 같다.

즉, 黃鍾尺 1尺 길이인 34.72cm를 기준으로 五禮 布帛尺을 환산하면, 44.75cm가(34.72cm × 1.289/1 = 44.75cm) 되는데, 이는 五禮 幣帛 欄에 그려진 新制 造禮器尺의 길이 28.6cm를 가지고 布帛尺을 換算한 것(28.6cm × 1/0.64 = 44.75cm)과 일치한다.

世宗 28年에는 新制 校正된 諸 尺度를 保存키 위해 律度에 맞춰서 銅으로 鑄造한 各 尺의 標本을 널리 各 官府와 各 山에 分藏 保管케 하였다(萬機要覽 財用篇), (柳聲遠, 1958), (李肯翹, 1967).

이후 約 270여년간은 尺度를 교정했다거나 바로잡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宣祖代에는 兵亂으로 度制가 무질서해지는데, 일반에서 실시되는 尺度는 더욱 紊亂했다.

世宗代에 銅鑄한 諸尺의 標準은 兵亂과 管理 疏忽로 전부 紛失되고 오직 江原道 三陟府에만 世宗때의 布帛尺이 남아 있었는데, 秋毫와 같은 細細한 금까지 넣었으며, 그 背面에는 '正統 11年 12月 新造 布帛尺'이라 刻名되어 있어 世宗 28年 丙寅(明 正統 11年)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李肯翹, 1967), (朝鮮舊社會事情, 1929).

이 三陟布帛尺의 길이는 46.73 cm로 世宗代의 두 종류의 布帛尺중 田制詳定所 布帛尺이 분명하며(朴興秀, 1967), 顯宗朝(1659-1674年)에 쓰여진 礪溪隨錄 卷二 田制下 부록에 實寸圖가 제시되어 있고, 公私間에 쓰던 布帛

尺의 길이는 三陟布帛尺에 비해 七分이 더 길다 했으므로(柳聲遠, 1958) 계산하면(1尺3寸4分6釐 + 7分 = 1尺4寸1分6釐) (46.73 cm × 1.416/1.346 = 49.16 cm) 당시에는 49.16 cm이상이 되는 布帛尺을 사용한 것이 되며, 度制가 紊亂하였음을 알 수 있다.

英祖 9年에는 王命으로 “度量衡에 관하여는 京中이면 工曹에서, 地方이면 營鎮에서 每年 秋分日에 前例대로 烙印하여 두고 비록 사용자라 할지라도 모두 수집하여 낙인함으로써 通用토록 한다.” 하였다(修文輯錄, 1964).

그후 英祖 26年(1750年)에 三陟 布帛尺을 經國大典에 依據하여 여러 자(尺)들을 비교하여 바르게 한 후, 中外에 頒布 施行하기를 請하니 임금이 그 말을 좇아 나라에서 布帛尺을 爲始한 諸尺의 길이를 世宗代의 것으로 재현하기로 하였다(李定求, 1926).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世宗 당시에 銅으로 鑄造하여 分藏시켰던 三陟布帛尺의 길이 46.73cm와 經國大典의 記錄 46.80cm 중 어느 尺度를 취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成宗代 以後부터 朝鮮時代 末期까지 편찬된 여러 冊의 기록이 모두 經國大典 記錄과 同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46.80cm로 再整備하였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經國大典의 46.80 cm의 布帛尺 길이가 顯宗朝(1659-1674年)에 편찬된 礪溪隨錄, 肅宗 27年(1701年)에 편찬된 典錄通考, 英祖 22年(1746年)에 편찬된 續大典, 45年(1769年)의 增補 礪溪隨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V. 朝鮮王朝實錄(中宗-英祖)에 나타난 布帛尺

朝鮮王朝實錄의 中宗代에서부터 英祖代까지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다.

1. 中宗實錄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中宗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中宗23年에 1件, 28年에 1件, 31年에 2件, 35年에 1件으로 모두 5件이다

中宗 23年 7月 8日 司僕侍 提調가 아뢰기를 “三田渡 上流의 물이 橫流하여 큰 비가 오면 반드시 물이 불어 넘치게 됩니다. 臣이 나가서 나무를 돌아보며 줄로 제보도록 하니 布帛尺으로 7百 80尺이나 되었습니다.”라는 記錄이 보인다.

<表 1> 黃鍾尺을 基準으로 한 世宗 代의 諸 標準尺의 길이

尺의 種類	— 尺의 길이	
	基準(黃鍾尺 1)	單位(cm)
黃 鍾 尺	1.0000	34.72
周 尺	0.5993	20.81
營 造 尺	0.8997	31.24
造禮器尺	0.8250	28.64
布帛尺(五 禮)	1.2890	44.75
布帛尺(田制詳定所)	1.3460	46.73

中宗 28年 3月 22日 戶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새 宣陵을 奉審하였는데 主山 뒤에서 내려온 脈의 등성 마루에 길이 40尺(布帛尺) 쯤 꺼진 곳이 있었습니다” 라는 記錄이 있다.

中宗 31年 2月 6日 동지사 권에는 아뢰기를, “犬項津을 막는 工事は 水軍 役使의 事目에 의하여 進行하고 있습니다. 現在 막아야만 할 곳을 布帛尺으로 헤아려 본다면 大略 3千餘 尺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5月 14日 정원이 工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本曹의 堂上官이 犬項의 防塞하는 곳을 살펴보니 新川의 방색하는 곳은 길이가 布帛尺으로 一百餘 尺이 되고 물의 깊이는 겨우 2尺이어서 工事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中宗 35年 7月 2日 忠淸道 德山縣에서 午時에, 해에서 베 1匹 길이쫓 떨어진 南方에 푸르고 붉은 雲氣가 해를 에워싸고 있었다. 안 들레의 길이는 베 4匹쫓 되었고 바깥 들레의 길이는 베 5匹쫓 되었으며 너비는 布帛尺으로 3尺쫓 되었다.

中宗實錄에 있는 布帛尺의 記錄을 살펴보면, 中宗 28년에는 나루의 길이를 잴 때, 28년에는 산맥의 등성 마루를 잴 때, 31년에는 河川의 工事に 35년에는 하늘에 나타난 붉은 雲氣의 길이를 表現할 때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 이는 世宗代와 마찬가지로 布帛尺을 戶曹나 工曹에서 길이를 測量하는데 使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明宗實錄

明宗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14年 2件, 20年 1件, 22年 1件 등 모두 4件이다.

明宗 14年 5月 17日 嘉山郡에 우박이 물을 퍼붓듯이 내렸는데, 人家의 간장독은 깨지지 않은 것이 없고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으며 밭이랑 사이에 布帛尺으로 2尺쫓 쌓였습니다.

12月 20日 慶尙道 安東府의 臨河縣에 두 곳의 물이 合流하는 큰 시내가 辰時부터 四時까지 물길이 끊겼다. 그 위아래 사이가 布帛尺으로 71尺쫓 되었는데 行人들이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었다.

明宗 20年 4月 3日 豆毛浦의 어부가 그물을 쳤더니, 어떤 物體 하나가 그물 안에 들어와 여러 사람들이 힘껏 강가에 끌어내 놓고 보니 큰 물고기였다. 길이가 布帛尺으로 10여 尺이고 너비가 3尺이었다.

明宗 22年 5月 16日

상이 六曹의 2品 이상을 中樞付에 모아 놓고 日本國에서 要請하여 온 事項에 대해 승락 與否를 議論하게 하였다. “日本國에서 布帛尺의 使用을 要請한 데 대하여는, 지

금의 자(尺)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世宗朝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後王으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明宗代에서도 中宗代와 마찬가지로 밭과 시내의 길이를 측량할 때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明宗 20年の 물고기를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했다는 記錄은 지금까지의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처음이다. 특히 明宗代에서 注目할 만한 事實은 明宗 22年 日本國에서 布帛尺을 使用하게 해달라고 要請했을 때 지금의 자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世宗朝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後王이 고칠 수 없어 不許한다는 內容이다. 日本國에서 布帛尺 使用을 要請하게 된 事由와 前王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고칠 수 없다며 不許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루어 推測컨데, 하나는 布帛尺이 當時 基準尺으로 가장 信賴할 수 있는 尺이었을 것을 可能性이 높고, 다른 하나는 世宗代의 尺度가 이때까지 별 다른 교정없이 그대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布帛尺의 1尺의 길이는 世宗代 田制詳定所의 布帛尺 46.73cm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3. 宣祖實錄

宣祖 代에는 19年 1件, 27年 1件, 28年 1件, 30年 1件, 36年 4件, 38年 1件 모두 9件으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가장 많다.

宣祖 19年 5月 3日 降雨量이 布帛尺으로 1寸 1分이었다.

宣祖 27年 7月 7日 平安監司 李元翼이 禮曹에 馳啓하였는데, 關內의 宣川 地方에서 靈龜가 나왔는데 布帛尺으로 재보니 길이는 2尺 5寸, 너비는 1尺 5寸, 높이는 4寸 5分이었다고 하였다.

宣祖 28年 11月 24日 정사의 接伴使 김수가 치계하기를, “中國 使臣이 近日 부산에 銅柱를 세우고 銘을 써서 境界를 나누는 일을 말하였으나, 臣이 所用되는 銅鐵이 많아서 形勢가 마련해 내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使臣이 銅柱의 길이는 7尺 남짓하고 그 들레는 2尺으로 하되 우리 나라 布帛尺을 使用하고 글자는 陰刻 혹은 陽刻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宣祖 30年 2月 25日 廣州의 南漢山城은 주위가 布帛尺으로 1万 7千 4百여 尺인데 外部는 險難하고 안은 깊숙하며 稜線이 매우 길어 갑자기 包圍할 수 없습니다. 南쪽은 약간 平地이고 다른 곳은 모두 巖石이어서 기어오르기가 不可能합니다.

宣祖 36年 2月 21日(4件) 黃海道 豐川의 바다에 岩石이 바다 속의 盤石 위에 있었는데 어느날 陸地로 올라왔다. 너비가 布帛尺으로 15尺이었고 높이가 5尺이었으며, 전에 있던 바다 속으로부터의 거리가 1百5尺이었다.

宣祖 36年 2月 29일 돌 위에는 본래 따로 서 있는 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의 바위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옮겨져 온 돌은 길이가 布帛尺으로 5尺 1寸이었고 너비가 2尺 5寸이었으며 두께가 2尺 2寸이었고 둘레가 12尺이었다.

宣祖 36年 5월 3日 忠淸道 燕岐縣에서 돌이 저절로 옮겨 갔다. 모양은 大豆처럼 둥글었고 옮겨 간 곳의 거리가 布帛尺으로 27尺이나 되었는데 옮겨간 자국이 없었다.

宣祖 36年 5月 23日 달도라는 섬이 있는데, 섬 안에 돌이 布帛尺으로 3자 3치, 너비가 3자 7치, 圓徑이 13자 2치나 되는 돌이 北쪽에서 南쪽으로 향하여 옮겨갔다. 그런데 두 地點 사이의 거리가 地尺으로 2百 25尺이나 되었다.

宣祖 38年 7月 2日 京畿 감사 李廷龜가 장계하였다. 竹州山城의 役事를 끝마쳤습니다. 城의 주위는 布帛尺으로 3千 8百 80尺이고, 內城은 1千 8百 90尺입니다.

宣祖實錄에는 다른 王朝보다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많이 나타난다. 兵亂으로 度制가 無秩序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推測이 可能하다. 그 內容들은 크게 3가지로 分類해 보면, 降水量을 測定할 때, 靈龜의 길이를 잴 때, 그리고 距離를 測量할 때 이다. 宣祖 代 특기할 만한 事實은 中國使臣이 銅柱를 세우는데 銅柱의 길이와 둘레의 치수를 布帛尺으로 測定해 달라고 注文한 점이다. 이는 布帛尺이 당시 여러 種類의 尺 중 가장 信賴할만한 基準尺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朝鮮 前期의 布帛尺을 研究할 때 여러 種類의 尺 중 가장 代表적인 것으로 基準을 삼아 그 比例로 다른 尺들의 길이를 換算했던 記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注目할만한 것은 宣祖36年 두 地點사이의 거리를 布帛尺을 使用해서 測量하면서도 同時에 地尺의 치수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4. 光海君 實錄

光海君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光海君 2年과 14年 各各 1件씩 모두 2件이다.

光海君 2年 10月 8日 말 달려 들어오는 곳 역시 어린 소나무가 뻗뻗히 들어 왔으니, 이것은 모두 잘라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말 위에서 행하는 여러 技藝의 경우, 말 달리는 길을 보건대 좁은 곳은 布帛尺으로 21尺밖에 안되고 넓은 곳이라야 27尺밖에 되지 않기에 武才를 試驗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光海君 14年 4月 22日 都監이 아뢰기를, “감군이 특별히 구하는 銅器 5百 件을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데, 서울 안의 匠人이 매우 적어 形勢上 10여 일 안에 다 만들기 어렵

습니다. 그 가운데 높이가 布帛尺 한 자 다섯 치나 되는 小燭臺 30쌍, 유행기 蓋具 30部, 酒煎子 30部 등을 開城府로 하여금 만들어 빨리 올려보내게 하되, 銅과 鐵은 그 들 어간 숫자를 計算하여 나중에 내려보내소서” 하였다.

光海君代에는 前代와 마찬가지로 布帛尺이 거리를 測量하는데, 銅器를 만드는데 使用되었음의 記錄으로 알 수 있다.

5. 仁祖實錄

仁祖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仁祖 11년에 1件이 있다.

仁祖 13年 3月 18日 좌의정 오윤겸이 아뢰기를 “大王 능의 무너진 곳은 子地에서 寅地까지는 布帛尺으로 재어 본 바 길이 15尺, 넓이 4尺에 구덩이진 곳으로 깊은 경우 1尺 남짓하고 얇은 곳은 4寸 남짓하며”라고 있다.

仁祖代 역시 거리를 測量하는데 布帛尺이 使用되었다는 記錄이 있다.

6. 肅宗實錄

肅宗 代의 布帛尺에 관한 紀錄은 44年, 45年, 46년에 1件씩 모두 3件이다.

肅宗 44年 10月 10日 量田廳에서 말하기를, “改量할 때에 使用하는 땅을 재는 尺을 새로 만들어 三南에 보냈는데, 全羅監司의 보고에 의하면 本道 여러 고을에 甲戌年의 量田 때 使用한 자가 있는데, 이번에 내려보낸 新尺과 對照하여 보니, 舊尺이 新尺보다 1寸이 긴 까닭에 지금 만약 짧은 자로 改量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의 원망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本道에 있는 그전의 자에 쓰기를, 布帛尺 2尺 2寸 2分 6釐를 基準하였다 하였고, 法典 안의 一等 量尺은 布帛尺 2尺 1寸 2分 6釐로 하였으므로, 그전의 자가 2尺 2寸餘가 되는 것은 制度에 違背됨을 면하지 못하니, 이는 當初 製作할 때에 후히 詳細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루어진 듯합니다.”

肅宗 45年 9月 13日 甲戌年의 量尺은 遵守尺과 모양이 어긋나는데, 그때에 그 尺을 제멋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仁祖께서 특별히 命하여 쓰도록 하셨습니다. 新尺은 舊尺에 대해 그 차이가 布帛尺 1寸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루는 바가 이미 매우 근소하였습니다.

肅宗 46年 6月 9日 禮房承旨가, “삼가 大行大王의 銘旌을 살펴보건대, 體樣이 지나치게 길다. 五禮儀를 가져다 上考해 보면, 銘旌의 길이는 9尺인데 禮器를 製作할 때의 尺을 使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銘旌은

布帛尺을 使用한 소치인 듯하여 禮式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都監의 해당 堂上官에게 改備해서 들여오게 하소서.”하니世子가 옳게 여겼다.

肅宗代에는 布帛尺의 用途에 관한 內容보다는 尺의 길이에 관한 論難이 3년에 걸쳐서 해마다 있었던 記錄이 보인다. 肅宗 44年과 45年 量田廳에서 製作하여 三南에 내려보낸 新尺이 그동안 使用하고 있던 舊尺보다 布帛尺 基準으로 一寸이 짧다는 것이다. 이 記錄을 보면 땅을 재는 量尺을 布帛尺에 준하여 길이를 定하고 있다는 것이 注目할 만한 점이다. 宣祖代 兵亂으로 度制가 紊亂해져 새롭게 整備하고자 할때 三陟府에 保管하던 尺이 世宗代의 布帛尺인지라 이 布帛尺을 모든 尺의 基準으로 삼지 않았나 推測할 수 있다.

7. 英祖實錄

英祖 代의 布帛尺에 관한 기록은 英祖 26年, 35年, 46年에 각 1件씩 모두 3件이다.

英祖 26年 4月 5日 右議政 兪奭基가 말하기를, “世宗 때에 布帛尺이 三陟府에 있으니, 該曹를 시켜 가져오게 하여 崔天若같은 솜씨 좋은 者를 시켜 大典 尺수에 따라 較正하게 하면, 黃鐘尺·周尺·禮器尺·營造尺도 다 그 制度에 맞아 差異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完成되고 나면 中外에 頒布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대로 따랐다.

英祖 35年 8月 21日 右議政 이후가 아뢰기를, “工曹에

서 새로 布帛尺을 나누어 주었는데 새 자가 옛날 자보다 짧아, 이 開市하는 때를 당하여 새 자를 使用하기도 어렵고 또한 옛날 자를 使用하기도 어려우니, 請컨대 廟堂으로 하여금 稟處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英祖 46年 5月 1日 世宗朝의 옛 制度를 模倣하여 測雨器를 만들어 昌德宮과 慶熙宮에 設置하라고 命하였다. 그리고 測雨器의 尺寸이 얼마인가를 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今番 두 宮闕에 石臺를 만들되 높이는 布帛尺으로 1尺이요, 넓이는 8寸이며, 구멍의 깊이는 1寸이니, 庚申年의 新製尺을 使用하라”하였다. 庚申年의 新製尺은 三陟府에 있는 世宗朝 때의 布帛尺을 취하여 經國大典을 참고해서 尺의 規式을 새로이 만든 것이다.

英祖 26年 世宗代의 布帛尺을 三陟府에서 가져와 大典의 尺수에 의거하여 較正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大典은 經國大典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黃鐘尺, 周尺, 朝禮器尺, 營造尺 등 여러 자(尺)들을 비교하여 바르게 한다는 기록이 있어 世宗代에 사용되던 이 尺들이 英祖代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世宗 當時에 銅으로 鑄造하여 分藏시켰던 三陟 布帛尺의 길이 46.73 cm와 「經國大典」의 기록 46.80 cm 중 어느 尺度를 취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經國大典에 依據하라는 기록이 英祖26年, 46年에 두 번씩이나 있어 經國大典에 있는 布帛尺 길이인 46.80 cm로 재정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朝鮮王朝實錄 中宗代에서 英祖代까지의 布帛尺에 관한 기록과 1尺의 길이를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표 2> 布帛尺에 관한 주요 기록과 1尺 길이(朝鮮王朝實錄 中宗-英祖)

王朝	기록 건수	주요 기록	특이 사항	1尺길이 (cm)
中宗	5	· 戶曹, 工曹에서 거리 측량 · 雲氣에 대한 길이 표현 (배 5匹, 너비 布帛尺 3尺)	· 옷감을 가능하는데 布帛尺 사용	46.73
明宗	3	· 거리 측량 · 물고기 길이 측정 · 日本國에서 布帛尺 사용을 요구	· 布帛尺을 基準尺으로 사용 · 世宗代 田制詳定所 布帛尺 길이 그대로 사용	46.73
宣祖	9	· 降水量 측정 · 거리 측량 · 中國 使臣이 銅柱를 세우는데 布帛尺 사용을 요구	· 兵亂으로 度制 문란-度制를 정비 · 布帛尺을 基準尺으로 사용 · 地尺의 尺수를 밝힘	46.73
光海君	2	· 거리 측량 · 동기 주조시	.	46.73
仁祖	1	· 거리 측량	.	46.73
肅宗	3	· 거리 측량 · 尺의 길이에 대한 논란	· 땅을 재는 量尺을 布帛尺에 준하여 길이를 정함	46.73
英祖	3	· 世宗朝의 三陟府의 尺을 가져다 교정 · 문란했던 度制에 관한 기록	· 世宗代의 尺을 가져다 經國大典에 의거 度制를 재정비	46.80

VI. 要約 및 結論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은 王朝 別로 기록되어 있어 年代 別로 國家에서 채택했던 尺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世宗 4년에는 布帛尺이 옷감을 재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 있고, 世宗 代부터 燕山君代 사이에는 城壁을 쌓을 때 測量時, 거리나 里程의 測量시 布帛尺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成宗 8년에는 木柄 길이를 재는데, 燕山君代에서는 사람의 身長을 재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다.

朝鮮王朝實錄 中期(中宗-英祖)를 살펴보면, 布帛尺의 용도가 前期보다 훨씬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布帛尺으로 布帛을 가능했던 기록이 中宗朝에서 보인다.

또한 明宗 22年 日本國에서 布帛尺 사용을 요청하게 된 사유와 前王때 만들어진 것이라서 고칠수 없으며 不許한 점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미루어 추측컨대, 하나는 布帛尺이 당시 基準尺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尺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하나는 世宗代의 尺度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布帛尺의 1尺의 길이는 世宗代 田制詳定所의 布帛尺 46.73cm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宣祖實錄에는 布帛尺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데 兵亂으로 度制가 무질서해져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宣祖代 中國使臣이 銅柱의 치수를 布帛尺으로 해달라고 주문한 기록은 布帛尺이 당시 基準尺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英祖 26年 世宗代의 布帛尺을 三陟府에서 가져와 大典의 치수에 의거하여 較正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布帛尺의 길이는 46.80cm로 제정비되었다고 본다. 또한 黃鐘尺, 周尺, 朝禮器尺, 營造尺 등 여러 자(尺)들을 비교하여 바르게 한다는 기록이 있어 世宗代에 사용되던 이尺들이 英祖代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포백척,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중기

參考文獻

- 經國大典(1970),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國朝五禮儀(1979), 影印本, 서울: 景仁社.
 金東旭(1973),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大典會通(1939),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大漢韓事典(1972), 省音社.
 萬機要覽, 民族文化推進會(編).
 朴興秀(1967),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同文化研究. 第4輯, 서울: 成大史學研究所.
 _____(1974), 度量衡, 서울 600年史, 第1卷, 國史編纂委員會編.
 _____(1975), 李朝尺度 基準으로서의 現水準의 價値, 科學技術研究」 第3輯, 서울: 成大附設科學技術研究所.
 史記, 卷2. 夏本紀初
 石宙善(1979),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修文輯錄(1964), 서울: 法制處.
 申榮熏(1979), 皇龍寺九層塔과 周尺, 古美術史, 第9卷.
 柳馨遠(1958), 國譯 礪溪隨錄, 田制編, 서울: 東國文化社.
 _____(1969), 增補 礪溪隨錄, 全, 서울: 景仁文化社.
 柳子厚(1940), 朝鮮貨幣考, 京城: 學藝社.
 六典條例(1973), 서울: 法制處.
 尹張燮(1975),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設學會誌 19卷 63號.
 李圭景(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東國文化社.
 李肯翊(1967), 燃藜室記述, 서울: 景仁文化社.
 李恩卿(1981),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梨大碩士學位論文.
 李定求(1926), 四千年文獻通考, 京城: 東明社.
 李弘植(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_____(1972), 國史大事典 II卷, 서울: 百萬社.
 田制詳定遵守條書, 奎章閣圖書.
 禮記 券3 王制篇.
 朝鮮舊社會事情(1929),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王朝實錄(1973), 國史編纂委員會(編), 影印本, 서울: 探求堂.
 增補文獻備考(1957), 서울: 東國文化社.
 韓國美術全集(1974), 서울: 同和出版社.
 韓國民俗大觀(1980), 서울: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資料綜合調查報告書(198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編).
 漢書, 券21, 上, 律歷志

(2007. 03. 18 접수; 2007. 05. 22채택)